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가합5081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안나현

변론 종결2022. 4. 13.

판결 선고2022. 5.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미화 1,335,100.65달러 및 그중 미화 1,253,767.33달러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나머지 미화 81,333.32달러에 대하여는 2019. 5. 5.부터 각 2022. 5.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1.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미화 1,335,100.65달러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화 1,335,100.6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화 1,335,100.6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에서 멀티탭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섬유제품·전기용품 등의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9. 30.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2012. 3. 30.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유일한 임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섬유제품·전기용품 등의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6. 3. 19.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2000년경부터 D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12. 14. 사임하였다. D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2017. 12. 14. E로 변경되었다가, 2018. 10. 30. 다시 F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수년간 D에 멀티탭을 제작·공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7. 11. 19. 무렵 피고 C과 2018년에 공급할 멀티탭의 가격조정방안에 관하여 협의한 뒤, 2018. 2. 7. D과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년 11월 19.일 원고는 멀티탭 원자재 상승과 인민폐 환율 하락 등의 문제를 D, C 사장 측과 협의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가격조정방안을 확정하였다. 아래 내용을 동의하고 엄격히 준수한다.

1. 조정사항

1.1 주요 원자재 가격: PP난연 톤당 11,500위안, PC 톤당 23,000위안, 황동 톤당 55,000위안, ABS 톤당 17,000위안, 환율(미국달러 대비) 6.5

1.2 이후 원자재 가격 급락 폭이 10%에 도달하는 경우, 양사는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3 상품가격은 FOB 상해기준

2. PC가격의 상승폭이 크기에 D은 D제품, G제품, H제품, I제품, J제품을 ABS로 진행하고 이후 PC가격이 톤당 17,000~18,000위안으로 내려가면 판매자는 PC로 생산한다. 판매하고 있는 K제품, L제품, M제품은 PC로 생산한다.

5. 결제조건과 기한: 쌍방 협의결정하여 현금 송금하고 2018년 1월 선적분부터 결제 주기는 100일내로 한다.

6. 가격 조정은 2017년 판매한 제품의 수량과 비율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2018년 양사는 2017년 제품수량 판매 비율을 감안하여 양사의 흑자, 적자 균형을 보장한다.

7. 본 가격 조정 시점: 2018년 2월 1.일부터 발송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품조정리스트는 별도 첨부한다.

라. D은 2018. 6. 22.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억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D과 피고 B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0억 500만 원

계약금 3억 5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전세금 1억 2,5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기로 한다.

잔금 25억 7,950만 원은 2018. 8. 31.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D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6. 22.로 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첨부한 전세계약서와 같이 기존 임차인 N(O) 8,500만 원, P(Q) 4,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총 1억 2,500만 원은 매수인 피고 B가 승계하는 계약임.
2. 근저당권 28억 원 중 R은행 가좌동지점 21억 원을 매수인 피고 B가 승계함.
3. 잔금 4억 7,950만 원은 2018. 8. 31.까지 분할입금하기로 별도약정함.

마. D은 2018. 6. 22. 피고 B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주식회사 R(가좌동지점)에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B는 D에 2018. 6. 22. 3억 원, 같은 달 25. 50만원 등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억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7. 23.부터 8. 16.까지 잔금으로 4억 7,950만 원²⁾ 을 지급하였다.

바. D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2018. 8. 24.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81회에 걸쳐 원고에게 멀티탭을 발주하였다. 원고는 2018. 9. 6.부터 2019. 1. 24.까지 19회에 걸쳐 멀티탭을

제작·발송하였고, 위 멀티탭은 각 그 무렵 D에 도달하였다. 위 각 공급분에 대한 변제기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8. 12. 15.부터 2019. 5. 4.까지이고, 물품대금의 합계는 미화

1,369,360.26달러이다. D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멀티탭 가운데 최초 선적분에 대한 대금(계약번호 S, 미화 85,788.03달러) 가운데 미화 34,205.61달러를 지급하였다.

[표 1]

S	2018. 12. 15.	85,788.03
T	2018. 12. 22.	84,705.06
U	2018. 12. 29.	69,294.44
V	2019. 1. 5.	82,812.36
W	2019. 1. 19.	37,777.97
X	2019. 1. 22.	37,065.40
Y	2019. 1. 26.	34,205.60
Z	2019. 2. 2.	77,710.25
AA	2019. 2. 9.	75,736.80
AB	2019. 2. 19.	72,724.90

S	2018. 12. 15.	85,788.03
AC	2019. 3. 1.	36,237.00
AD	2019. 3. 5.	82,520.21
AE	2019. 3. 17.	90,956.49
AF	2019. 3. 20.	85,293.57
AG	2019. 3. 29.	85,950.85
AH	2019. 4. 14.	86,441.38
AI	2019. 4. 20.	78,461.29
AJ	2019. 4. 29.	84,291.34
AK	2019. 5. 4.	81,333.32
합계		1,369,306.26

사. D은 2019. 2. 1. 서울회생법원 2019간회합100013호로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같은 해 3. 7.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나(이에 따른 간이회생절차를 이하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라 한다), 같은 해 6. 28. D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9.부터 2019. 1.까지의 멀티탭 공급에 따라 D에 대하여 미화 1,335,100.65달러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다.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2017. 11. 19.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각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유효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최대 그 채권최고액인 1,266,000,000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 결과 3,276,801,000원으로 위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며, 그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물품대금채권액을 초과한다.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화 1,335,100.65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에 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고 있다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공급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그 자체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8. 9. 무렵부터 D에 계속하여 멀티탭을 공급한 결과 현재 D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D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물품공급거래를 하여 왔다는 점, 원고와 D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 내용과 같이 향후 공급할 멀티탭의 원자재, 거래단가의 조정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2018. 9. 이후 공급할 멀티탭의 종류, 수량, 거래시기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D에 공급할 멀티탭의 수량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사전에 제작에 착수하였다거나 외상거래의 규모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오히려 원고는 D의 2018. 8. 24.부터의 개별적인 발주에 따라 비로소 공급할 물품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D 사이의 2018. 9. 무렵부터의 거래에 관하여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2018. 6. 22.) 이전에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다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원고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D 사이에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물품대금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와 D은 모두 피고 C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D이 수입하여 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멀티탭의 수입·판매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D과 유사한 상호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3) 2)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3호증, 을가 제2, 10, 1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과 피고 B는 피고 C이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 C이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D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B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D의 채권자는 피고 B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피고 C은 약 17년 동안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D을 운영하여 왔고, 자신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AL' 상표를 D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유일한 임원으로서 피고 B의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AL' 상표를 피고 B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② D 직원들이 원고에게 주었던 명함에는 'AL' 상표와 관련 도메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가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위 상표와 도메인 주소는 피고 B가 사용하고 있다. D은 'AL' 상표의 멀티탭을 원고 등의 중국 공장에서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고, 현재 피고 B는 D이 종전에 판매하였던 것과 동일한 상표·품목의 멀티탭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③ D과 피고 B는 그 상호가 유사하고, 주요 식별부분인 'D'이 일치하며, 피고 B의 나머지 상호 부분은 D이 영업상 사용하였던 상표 'AL'와 일치한다. D의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와 같았는데 2019. 3. 20. 다른 주소로 변경되었고, 피고 B의 본점 소재지가 2019. 3. 2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되었다.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영업목적은 '신변잡화(넥타이, 스카프 등) 무역업', '섬유 원부자재 수입 및 제조판매 수출입업', '완제품 수입 및 도·소매업(넥타이, 스카프, 의류 등 섬유관련제품)', '패션 악세사리(소품) 수입 도·소매업', '전기, 전자, 통신, 조명용품 제조판매업', '전기, 전자, 통신, 조명용품 수출입업', '사출, 프레스 가공판매업', '사출, 프레스 임가공업' 등으로, 피고 B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영업목적인 '생활용품 무역업', '생활용품 도·소매업', '넥타이, 스카프, 의류 등 섬유관련 완제품 수입 및 도·소매업', '전기, 전자, 통신, 조명용품 제조 판매업', '전기, 전자, 통신, 조명용품 수출입업', '사출, 프레스 가공 판매업', '사출, 프레스 임가공업' 등과 상당수 항목이 일치한다.

④ 비록 피고 C이 2017. 12. 14. D의 임원을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C의 사임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약정서에도 피고 C이 '사장'으로 언급되어 있고, 피고 C 이후에 D의 사내이사가 된 E는 D의

직원이던 AM과 F의 모친이며, E 이후에 사내이사가 된 F은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⑤ 피고 B는 2017. 5.까지 국민연금 가입 임직원이 피고 C 1인이었다가, 2017. 6. 1. 직원 1명, 2017. 12. 1. 직원 2명이 추가되는 등 2018년경에 이르러 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영업을 당초보다 활성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위와 같이 피고 B가 활성화된 이후인 2019년경부터 직원의 수가 감소하고 매출액이 급격히 축소되어 간이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자산상황이 악화되었다.

⑥ 피고 B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과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 작성에 관하여 협의한 2017. 11. 1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유형자산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6. 28.자로 채권최고액 12억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1건 설정되어 있었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서 작성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어 원고와의 물품공급거래가 예상되던 2017. 11. 19. 이후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2018. 6. 22.) 이전까지 2017. 12. 2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가좌동지점), 채권최고액 8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8. 3. 3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N, 채권최고액 3억 9,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8. 4. 6. ㉠ '근저당권자 AO,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 '근저당권자 AP, 채권최고액 3억 원', ㉢ '근저당권자 AQ, 채권최고액 3억 원', ㉣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전후로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550만 원인 6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자들 중 AO은 2018. 2. 1. 피고 C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체 받아서 같은 날 D으로 위 돈을 그대로 이체하였고, 다시 2018. 6. 25. D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돌려받아서 같은 날 이를 그대로 피고 C에게 이체하였으며, AP, AQ, P 역시 2018. 4. 초순경 제3자로부터 이체된 각자의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금액의 돈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D에 이체하였는데, 그와 같은 거래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위 각 근저당권이 2018. 4. 6. 동시에 설정되었다가 2018. 6. 22. 동시에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4인의 근저당권(2018. 4. 6.자 내지 ㉣)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설정되어 당초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일하게 피고 C이 지배하고 있는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무렵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리라 보고 보인다. 그럼에도 D과 피고 B는 위 AO 등

4인의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합계 28억 원이라고 언급하였고(특약사항 제2조), D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계약 당일에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⑦ D은 원고에 대한 다액의 물품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9. 1. 간이회생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AP, AQ에 대한 각 3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시인하였는데, 위 ⑥항에서 본 바와 같이 AP, AQ과의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나) 위 1.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D에 대하여 합계 미화 1,335,100.65달러(= 미화 1,369,306.26달러 - 미화 34,205.61달러) 상당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화 1,335,100.65달러 및 그중 미화 1,253,767.33달러(= 1,335,100.65달러 - 81,333.32달러)5) 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1.부터, 나머지 미화 81,333.32달러6) 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5.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멀티탭을 자신이 지배하는 피고 B 및 다른 직원들이 개인사업체를 통하여 판매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매각한 뒤 D에 대한 회생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회피하였으므로, 법인 제도를 남용한 배후자로서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C의 부친인 AR가 오랜 기간 원고와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D를 사실상 대표하여 왔고 피고 C 역시 십년 이상 D의 대표자로서 원고와의 거래를 주도하여 온 사실, 피고 C이 자신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D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 즉 ① 피고 C은 2017. 12. 14. E에게 D의 주식을 양도하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C과 E 사이의 관계는 피고 C이 대표이던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이들의 모친이라는 점 외에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E, F이 각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는 그 개업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D은 2017년 및 2018년에 일정한 규모의 직원을 갖추고 수십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등

2018년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과 피고 C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D이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밝힐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에 멀티탭을 공급한 2018. 9.부터 2019. 1.경 D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피고 C의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피고 C이 D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선택적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멀티탭을 외상으로 인도받고 그 채무를 면탈하고자 D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다수 설정시켜 그 가치를 하락시킨 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인 피고 B로 이전시켰는데, 이는 사기 또는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6. 설정된 각 근저당권 무효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해당 무효인 근저당권들이 모두 말소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모두 D의 원고에 대한 멀티탭 발주 및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D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멀티탭을 발주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거나, D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행위 또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석재

판사이유섭

판사홍인

별지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청구와 물품대금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는 동일하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2) 잔금 4억 7,950만 원 가운데 2억 8,950만 원은 현실로 지급하고, 1억 9,000만 원은 D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였다.

3) 원고는 일부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주장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원고가 구체적인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D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 C이 D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B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피고 B의 법인격 남용(회사제도 남용)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참조).

4) 위 4인의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24억 6,650만 원(= 2013. 6. 28.자 12억 6,600만 원 + 8억 400만 원 + 3억 9,650만 원)이다.

5) 2019. 4. 30.까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계약번호 AK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한 대금

6) 계약번호 AK의 물품에 관한 대금